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3670
------------	------

2026. 6. 12.
주택공간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5. 26. 이효진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6. 5. 27.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6회 정례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2026. 6. 12.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이효진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립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임산부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임산부에 대한 입장료(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 시설 입장료(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신부를 추가하여, 임신부가 해당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임산부 지원조례')¹⁾에 따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건축전시관'의 이용료 면제 대상에 임신부를 추가하려는 것임.²⁾

현행	개정안
제8조(이용료) ① ~ ③ (생략)	제8조(이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설>	11. 「서울특별시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신부 본인
11. (생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1) 제정·시행 2024.5.20.

2) 임신부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임신부에 대한 입장료 등을 감면하고자 제336회 정례회에 이 개정조례안 외 총 7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시에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임산부 지원조례³⁾는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임산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임산부에 대한 입장료 감면’,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중 입장료 등 감면은 임산부의 문화적 욕구 충족 등의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의 입장료·사용료·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고⁴⁾,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이 소유한 시설의 경우 입장료 감면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 **안 제8조제4항제11호**는 임산부 지원조례를 준용하여 임산부 본인에 한해 서울시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도시건축전시관’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도시건축전시관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기획하거나 전시관 대관허가를 받은자가 개최하는 ‘전시 및 공연, 행사’의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때 이용료 면제 대상은 같은조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개정을 통해 ‘임산부’를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검토보고서 붙임 1 참고)

3) 서울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소관

4) 서울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은 총 15개소, 체육시설은 10개소임(검토보고서 붙임 3 참고)

(참고 :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2024.4.23))

5)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사용료·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현행 조례 상 도시건축전시관 이용료 면제대상(조례 제8조제4항 각 호)>

- ①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②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③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⑤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⑥65세 이상의 사람
- ⑦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⑧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 ⑨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⑩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
- ⑪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참고로, 현재 도시건축전시관은 옥상 및 지상 1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에서 서울시 및 8개 지자체⁶⁾와 함께 주요 관광홍보 및 전시, 체험공간(‘지역관광 안테나숍’)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지하 2층부터 지하 3층까지는 미래공간기획관(미래공간담당관)에서 시민소통방 및 전시장, 설계공모 디지털심사장, 주택정책소통관으로 운영⁷⁾ 중으로, 모든 공간은 별도의 이용료나 입장료 없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함.⁸⁾

<도시건축전시관 시설개요>

- 관련규정: 서울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위 치: 중구 세종대로 119 (면적:1,558.3㎡)
- 건축규모: 지상1층~지하3층, 연면적 2,998㎡
- 재산관리관: 관광정책과, 미래공간담당관(분임)
 - 운영·관리: (관광정책과) 옥상~지하1층,
(미래공간담당관) 지하2층~지하3층



6) 강원, 경기, 경북, 전북, 전남, 제주, 충남, 안동

7) 지난 2025년 1월 1일자로 재산관리관이 주택실 한옥건축자산과에서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로 변경되었으며, 운영부서는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와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이 총별로 관리·운영 중에 있음. (한옥건축자산과-5730(2024.12.5.),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업무이관계획”)

8)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과거 민간위탁 방식에서 직접운영 방식으로 전환한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전시를 무료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2025년 8월부터 관광체육국에서 운영 중인 ‘지역관광 안테나숍’ 역시 별도의 이용료 등은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도시건축전시관은 과거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민간위탁 협약 체결을 통해 도시건축관련 민간 단체에서 운영해왔으나, 민간위탁 운영 종합성과평가위원회 심의결과(2022.7.4.) 민간위탁금 사용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민간위탁계약을 종료하고, 시 직영운영(운영용역 발주) 방식으로 전환하였음.(도시공간기획과-23613(2022.7.7.), “2023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방식 검토보고”)

- 따라서, 도시건축전시관의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임산부를 포함하더라도 조례개정의 즉시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나, 향후 기획전시, 허가받은자의 특정 전시·공연·행사 등이 개최되어 이용료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감면하여 임산부를 사회적·정책적으로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이용료) ① ~ ③ (생 략)</p> <p>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 10. (생 략)</p> <p><u><신 설></u></p> <p>11. (생 략)</p> <p>⑤ (생 략)</p>	<p>제8조(이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u>」에 따른 임산부 본인</p> <p>12. (현행 제11호와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